

유자녀가구 유형별 빈곤의 사회경제적 특성연구: 남성한부모가구, 여성한부모가구, 양부모가구 비교분석*

김 학 주**

본 연구는 유자녀가구를 가구주의 성별에 따라 남성한부모가구, 여성한부모가구, 양부모가구로 분류한 다음 가구유형별 경제적 빈곤실태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부모가구라 할지라도 가구주 성에 따라 이질적인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발견되었다. 또한 여성한부모가구주들은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에도 상대적 빈곤층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이는 단순히 인적 자본의 확충만으로는 이를 가구를 상대적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한부모가구들에서 이전소득보다는 가구주 근로소득의 절대적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한부모가구의 빈곤탈출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저생계비 기준의 단순한 상향조정보다는 어린 자녀를 가진 한부모가족을 위한 직접적인 양육 및 주거 비절감 대책이 요구된다. 둘째, 남성한부모가구의 경우에도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효과가 매우 적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최저생계비 결정 및 집행과정에 있어서도 현재는 가구원 총수만이 고려되고 있으나, 사적이전소득의 격차와 기타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차 이를 고려하여 가구주의 성별, 자녀수, 자녀의 연령 등에 따라 차등화된 세부 기준에 따라 시행되는 편이 보다 합리적이다. 셋째, 저소득층 한부모가구주들을 대상으로 보다 나은 근로조건과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는 근로연계형 복지제도와 대상자의 특성별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시행되어야 한다.

핵심단어: 가구유형, 남성한부모가구, 여성한부모가구, 경제적 빈곤

I. 서 론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에서 가족은 복지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 취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개별가족성원을 주 개입대상으로 하는 현행 가족관련 복지정책은 요보호가족을 위한 공공부조와 의료급여 등을 통한 최소한의 경제적 안

* 이 논문은 2006년도 경상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죄고관리자과정 연구장학재단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가족의 경제적 빈곤문제의 심각성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적 개선노력은 극히 미흡한 형편이다. 한편, 1990년대 이후 가족형성의 출발점인 혼인을 기피하는 독신자가구의 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이혼 경향 또한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5년 현재 연간 이혼건수는 12만 8,468건으로 1990년의 4만 5,700건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인구 천 명당 이혼율 수치는 2.6으로 1990년의 약 2.5배에 이르고 있다(통계청, 2006).

가구구조의 변화추이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형태의 양부모가구가 아닌 1인 가구 및 한부모가구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전체 가구 중 한부모가구 비율은 85년 8.9%, 90년 7.8%, 95년 8.6%, 2000년 9.4%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2005). 한부모가구 대신 그 동안 편부모가족, 모자가정/부자가정, 결손가족 등의 용어들이 사용되어 왔다. 한부모가구는 결손의 부정적인 의미를 보다 긍정적인 의미로 전환하기 위해(한가위의 ‘한’과 같은 의미로 하나로도 충분하고 가득하다는 뜻) “이혼, 별거, 사망, 유기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양친 중의 한쪽과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한다. 이때 남성이 가구주인 경우 남성한부모가구, 여성이 가구주인 경우는 여성한부모가구로 부른다(한국여성개발원, 2002).

양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 아직까지 많은 수를 차지하지만 그 외의 다양한 유자녀 가구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중에서 크게 이혼, 별거, 사별, 배우자의 가출 등의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부모가구의 발생원인으로 이혼이 가장 높은 비중을 아직까지 차지하지만 결혼제도에 얹매이지 않고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여성가구의 증가경향이 뚜렷한 서구 선진국들과는 달리 부모의 이혼에 의해 한부모가구가 급증하는 경향은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이성립, 2004).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 층 한부모가구의 확산현상은 향후 가족복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한부모가구의 증가현상이 배우자의 사별 보다는 이혼이나 별거, 유기 등에서 기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쪽 성인부모의 부재가 가정의 빈곤과 자녀 양육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한부모가구의 증가현상은 경제적 측면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 감소 또는 상실의 문제를 불러오게 되어 여성 또는 남성 가구주로 하여금 부족한 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노동시장에 나서게 한다. 보건사회연구원의 한 조사에 따르면 저소득 여성한부모가구의 77.4%가 양부모가구에서 여성한부모가구로 바뀜에 따라 경제적 소득 수준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김미숙 외, 2000). 이때 성인부모, 특히 모의 경우 취업할 수 있는 직업이 저소득 임시직 또는 일용직에 제한될 가능성 이 매우 높다. 특히 이들 집단에서 나타나는 빈곤의 장기화는 주택문제와 자녀

양육관련 가구부담의 증가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매우 크다. 전체 여성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율은 2002년 현재 66.7%이며 임시직 30.6%, 일용직 11.5%로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전체 여성 근로자의 1/2를 넘고 있다는 보고는 이 같은 우려를 뒷받침한다(통계청, 2003).

자녀양육과 소득보장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가구주들을 위한 효과적인 가족정책 및 제도적 방안을 실질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확한 빈곤실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 가구유형별 빈곤실태에 관한 기준의 연구들이 주로 노인, 장애인, 여성가구주 가구에 집중되어 온 바, 본 연구에서는 남성한부모가구와 여성한부모가구를 분리하여 이들 각자가 처한 빈곤실태를 양 부모가구의 경우와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가구주 및 기타 가구 관련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가구유형별 빈곤지위를 분석하고 경제적 변수들(공적 또는 사적이전소득, 자산 등)의 빈곤감소효과를 검토한 다음 한부모가구의 빈곤탈출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그동안 한부모가구의 경제적 빈곤실태에 관한 일부 선행연구들은 가구유형별 빈곤수준의 편차가 존재함을 보고한 바 있으나 주로 여성한부모가구 사례에 집중되어 온 경향이 있다. 김미숙 외(2000)는 양부모가구에서 한부모가구로 전환 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어려움이며 그 다음이 자녀양육과 교육문제 순으로 나타났고, 자녀양육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교육비 부족임을 보고하였다. 한부모가구 중 특히 여성한부모가구의 경우 남편의 부재로 인해 주 수입원인 소득이 1/3에서 반 정도까지 감소되거나 상실되고 있으며, 또한 저소득층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에게는 생계유지를 위한 취업문제가 매우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조사전년도인 1999년의 저소득 재가 모자복지 대상 여성한부모가구들 중 88%가 취업을 한 상태였으나, 일용직이 47.5%를 차지하는 등 대체로 불안정한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었다. 또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구 중 81.6%는 여성한부모가구로 모자복지대상 가구의 공적부조혜택 수혜비율이 가장 높았다.

옥선희·성미애·허정원(2001)도 이와 일치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저자들은 첫 자녀가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며 생산 및 서비스직, 노무직에 종사하고 있거나 구직중인 빈곤층 여성가장 가족을 대상으로 외환위기 이후

빈곤 여성가장 가족의 생활실태와 생활만족도, 소외감 수준 및 복지제도에 대한 욕구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경제적 어려움이 여성가장이 된 후 가장 큰 어려움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힘든 문제는 자녀 양육 및 교육으로 나타났다. 빈곤 여성가장의 84.9%가 본인의 수입으로 생활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생활비의 30% 이상이 자녀의 사교육비로 지출되었다. 또한 자녀 양육 및 교육에서 겪는 어려움 중 자녀의 양육비 및 교육비가 부담이 된다고 응답한 여성가장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심각한 경제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저소득 여성한부모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도록 직업훈련을 활성화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여성한부모가구의 근로경험과 관련하여 고순이(1990)의 연구는 수원시의 2개 구청을 통하여 빈곤모자가정의 소재를 파악하고 경제문제, 주택문제, 건강문제, 교육문제, 정서문제 영역에서 이들의 욕구를 분석한 바 있다. 연구 결과 빈곤 모자가계의 주요수입원은 모의 근로소득인 반면 지출이 소득을 초과하는 적자가계를 운영하고 있어서 공공부조대상 수준이지만 공적인 경제지원을 받는 가계는 극소수임이 밝혀졌다.

서울시 소재 모자보호시설에 거주중인 24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희선(1998)의 연구에서도 여성 가장의 대부분이 파출부, 노점상 등 저임금의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약 50만원 내외의 소득과 함께 약간의 생계비 지원을 받아 빈곤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더구나 이들 가운데 약 3분의 2 정도는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고 자녀교육비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순이(1990) 연구와 비교하여 생활상태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후 박재규(2003)의 연구에서는 여성 가구주 가계의 열악한 상황이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낮은 지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25.1%)이 남성가구주 가구(14.1%)에 비해 매우 높은 이유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차별로 인한 성별 임금격차와 직종분리현상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최선희(1999)의 여성빈곤 문제에 대한 논리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보인다.

지금까지의 한부모가구에 관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다음의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우선, 가구주 성별에 따라 한부모가구가 처하게 되는 경제적 여건이 다르다는 점이다. 여성한부모가구는 남성한부모가구보다 소득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가계빈곤에 처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 또한 한부모가구 중에서 여성인 가구주인 비율이 남성이 가구주인 비율에 비해 높으며, 빈곤을 겪는 기간도 더 길다(김

영란, 1998; 옥선판 외, 2001; 김윤정, 2001; 변화순 외, 2002). 옥선판 외(2001)의 연구에서 여성가장의 약 60%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김미숙 외(2000)의 연구에서도 저소득 여성한부모가구의 70% 이상이 여성가구주 가구로 변화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여성한부모가구의 소비지출에 있어 가구 총소득대비 자녀 양육과 교육항목에 관한 지출이 다른 유형의 가족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여윤경·양세정, 2001). 또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남성에 비해 여성이 불리한 취업조건과 낮은 교육수준에 기인하는 인적자본의 취약성 때문에 비정규직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최근의 연구에서도 모자가족의 단순노무직 비율이 45.4%로 조사되었으며 이들에게 제공되는 정부의 보조금도 여성과 아동을 빈곤상태에서 벗어날 정도의 액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김영화·조희금, 2002). 박영란·강철희(1999)의 연구에서도 저소득층 모자가정 가구주 중에 고졸이하의 저학력자 비율이 54.6%로 보고된 바 있다. 위와 같은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몇 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빈곤실태연구의 한계점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여성한부모가구에 집중된 연구경향은 남성한부모가구주를 포함하여 최근에 급증하는 다양한 형태의 유자녀가구간의 재정적 복지의 편차를 반영하지 못한다(김미숙 외, 2000; 박경숙, 2001; 2003). 한부모가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여성한부모가구와 함께 저소득층에 위치한 남성한부모가구를 포함하는 전체 유자녀가구의 빈곤실태와 빈곤여부에 영향을 주는 사회경제적 특성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둘째, 가계 내 소득액에 기초한 빈곤을 중심으로 한 선행연구의 편향성은 소득 원천별 빈곤감소 효과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준다. 특히 한부모가구의 재정적 소득빈곤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설명변수인 공적 또는 사적이전소득의 효과에 대한 분석이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박영란·강철희(1999)의 연구는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공적소득이전만을 고려한 반면 주인숙(1998)은 이전소득의 성격을 명확히 구별하지 않고 있어서 한부모가구의 경제적 빈곤에 관한 공적소득이전과 사적소득이전의 역할을 개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셋째, 한부모가계의 경제적 빈곤실태는 가구주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연령, 교육수준, 취업형태 등)뿐만 아니라 기타 가구관련 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제6차 노동패널자료(2003년도)를 이용하였다.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는 주요 이유로는 첫째, 노동패널조사가 가구와 가구내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경제활동참여 및 소득, 지출, 부채 등 가구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한국노동연구원, 2005). 둘째, 자료수집의 대상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한정된 단점을 가지고 있으나,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이 이루어져 있으므로 분석 결과에 대한 일반화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이다. 셋째, 가계의 소득 및 소비지출 값이 항목별로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최근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한 이유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자녀 가구유형과 빈곤여부에 따라 사회인구학적 특성(가구 주의 성별과 연령, 교육수준, 종사상 지위) 및 가구 관련특성(18세 미만 자녀수, 거주형태, 가구유형),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자산, 부채내역 및 공적 및 사적이전 소득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공적 및 사적 이전소득의 빈곤율 감소효과를 분석하였다. 표본통계량 수치는 해당년도의 횡단적 가중치 변수를 이용하여 전국추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보정되었다.

일반적으로 가구유형은 가구의 구성형태 또는 특정한 속성에 의해 분류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상 18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전국의 유자녀가구로 연구대상을 한정하였으며 가구주의 존재와 성별에 따라 양부모가구, 남성한부모가구, 여성한부모가구로 나누어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가구유형을 분류하여 유자녀가구의 경제적 빈곤실태를 분석하는 주된 이유는 가구유형이 가구내 활용 가능한 경제적 자원의 크기와 범위결정과 실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의 미충족된 욕구종류와 수준 또한 유형별로 상이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여윤경·양세정, 2001). 먼저 유자녀 가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유형별로 비교하기 위해 가구주의 만연령, 교육수준, 종사상의 지위, 주거형태, 18세 미만 자녀수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중퇴 또는 졸업, 대학교 이상으로 분류되었으며 종사상의 지위는 정규직, 임시직 또는 일용직, 고용주, 자영업)미취업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유자녀가구의 현재 주거형태는 자가, 전세, 월세, 기타로 구분하였고 한부모가구의 발생원인은 미혼, 이혼, 별거, 사별로 범주화하였다.

가구 총소득은 가계의 모든 종류의 소득원으로부터 들어오는 월평균 가구소

득으로 근로소득, 자산소득,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적이전소득 등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근로소득은 일의 대가로 벌어들인 수입을 말하며, 직장 또는 일자리에서 받은 임금이나 자영업자의 소득이 이에 포함된다. 자산소득은 금융소득과 부동산소득으로 구분되는데 금융자산을 통하여 벌어들인 수입으로 예금의 이자소득, 주식의 배당금, 사채 또는 채권이자, 주식매매료, 부동산매매차익과 사보험금이나 퇴직금, 중여/상속수령액을 포함한 기타소득을 포함한다. 공적 이전소득원에는 사회보험지급액과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가 해당되며, 사적이전소득은 친척, 친지보조금 및 기타 지역사회에서 제공받는 소득으로 구성된다.

기타 가계경제의 건전성을 측정하는 척도로서 가계자산, 부채, 자산대비 부채부담 등이 사용되었다. 해당 가구의 절대적 빈곤 또는 상대적 빈곤여부는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절대적 빈곤여부는 당해연도 가구원수에 따른 최저생계비기준을 사용하여 판정하였으며, 상대적 빈곤여부는 OECD의 국가간 비교에서 통용되는 중위소득 기준 50% 미만 가구로 정의하였다(Bane and Ellwood, 1986). 이때 가구원수가 가구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가구균등화 지수(equivalence scale)를 고려하여 가구균등소득을 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Feenberg and Poterba, 2000; UNDP, 2003). OECD를 비롯하여 많은 국가에서는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소득을 나누어서 균등화된 소득수준을 도출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다른 연구에서도 가구균등화 지수를 0.5승으로 삼고 있다(박찬용 · 김진욱 · 김태환, 1999; 김학주, 2005).

IV. 분석결과

1. 가구유형별 사회인구학적 특성

다음의 <표 1>은 유자녀 가구집단을 가구주의 존재와 성별에 따라 크게 양부모가구, 남성한부모가구, 여성한부모가구 세 집단으로 나누어 각 집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전체 유자녀가구 중 양부모가구는 92.73%, 남성한부모가구는 3.03%, 여성한부모가구는 4.24%로 나타났다. 가구주 연령대별 분포에 있어서 4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모든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부모가구주들의 경우 40대와 5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이들은 5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 각각 23%, 17%를 차지하고 있는

데 이는 양부모가구의 5.6%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한부모가구의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남성한부모가구의 경우 별거 비율이 약 65%로 가장 높았으며 사별과 이혼이 그 다음이다. 여성한부모가구의 경우는 배우자와의 사별이 약 5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별거와 이혼이 나타났다. 한부모가구의 상대적 빈곤을 설명함에 있어 남성한부모는 별거, 여성한부모는 사별이 빈곤가구 중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혼에 비해 별거가 빈곤율이 약 3배 정도 높다.

<표 1> 가구 유형과 빈곤여부별 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

	양부모가구(n=3577)			남성한부모가구(n=58)			여성한부모가구(n=84)		
	전체	비빈곤	빈곤	전체	비빈곤	빈곤	전체	비빈곤	빈곤
구성비율	92.73	95.74	4.26	3.03	50.91	49.09	4.24	37.51	62.49
가구주연령	($\chi^2 = 11821.98^{***}$)			($\chi^2 = 38612.95^{***}$)			($\chi^2 = 5830.64^{***}$)		
30 -	2.94	51.90	54.19	4.01	4.81	0.00	5.99	3.61	10.96
30-39	38.65	19.47	23.39	16.16	13.79	28.19	23.26	26.08	17.37
40-49	50.32	25.45	21.38	56.30	66.05	7.01	53.51	53.38	53.76
50 +	5.60	3.18	1.04	23.52	15.36	64.81	17.24	16.92	17.91
한부모 발생원인	($\chi^2 = 262989^{***}$)			($\chi^2 = 475.56^{***}$)			($\chi^2 = 4138.74^{***}$)		
미혼	-	-	-	1.12	1.34	0.00	1.29	1.91	0.00
이혼	-	-	-	14.86	14.47	16.85	17.47	20.20	11.77
별거	-	-	-	64.80	64.60	65.82	31.49	31.23	32.01
사별	-	-	-	19.22	19.59	17.33	49.75	46.65	56.22
기구주교육수준	($\chi^2 = 52547.26^{***}$)			($\chi^2 = 5663.87^{***}$)			($\chi^2 = 4864.62^{***}$)		
중학교이하	15.25	14.76	26.12	34.49	32.76	43.25	36.41	39.59	29.77
고등학교	48.31	48.22	50.23	49.83	48.46	56.75	41.71	42.66	39.72
대학교 이상	36.45	37.01	23.66	15.68	18.78	0.00	21.88	17.75	30.51
종사상의 지위	($\chi^2 = 108159^{**}$)			($\chi^2 = 13445.18^{***}$)			($\chi^2 = 50817.75^{***}$)		
상용직	38.96	39.74	21.32	31.20	34.71	13.43	47.68	53.59	35.34
임시직/일용직	8.40	8.29	10.75	20.92	22.06	15.14	10.97	11.00	10.91
고용주	7.38	7.56	3.29	4.85	2.48	16.81	6.46	9.55	0.00
자영업	10.29	10.41	7.62	18.76	18.17	21.72	9.12	13.49	0.00
미취업	34.97	34.00	57.02	24.28	22.58	32.90	25.76	12.36	53.74
주거형태	($\chi^2 = 199386^{***}$)			($\chi^2 = 6561.73^{***}$)			($\chi^2 = 22647.30^{***}$)		
자가	56.89	58.10	29.81	52.87	56.49	34.53	37.91	40.72	32.05
전세	30.82	30.49	38.20	24.80	24.80	24.81	29.04	27.58	32.10
월세	7.55	6.96	20.82	12.22	9.93	23.81	20.43	25.65	9.54
기타	4.74	4.46	11.17	10.11	8.77	16.85	12.61	6.05	26.31
18세 미만 자녀수(평균)	1.75	1.75	1.75	1.57	1.64	1.49	1.56	1.58	1.55
(표준편차)	30.90	30.73	32.02	33.52	33.38	33.83	31.76	29.73	33.28
(t/p)	(t=41.23***)			(t=12.27***)			(t=19.69***)		

* p<.05, ** p<.01, *** p<.001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한부모가구가 양부모가구에 비해 매우 낮다. 특히 중졸 이하의 교육수준을 가진 한부모가구주의 비율이 양부모가구에 비해 두 배 이상 높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취업 시 근로소득 수준을 반영하는 주요 인적자본 요인임을 감안할 때 한부모가구의 낮은 교육수준은 이혼 또는 사별 이전부터 해당 가구의 빈곤여부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여성한부모가구주의 경우 빈곤여성한부모가구의 약 31%가 대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어 학력수준이 높은 경우에도 빈곤화률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를 가구유형별로 비교할 경우 통계적으로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양부모가구의 가구주 미취업 비율은 약 35%이고, 남성한부모가구와 여성한부모가구의 미취업 비율은 각각 약 24%, 26%로 제시되어 취업률에 있어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그러나 한부모가구의 경우 취업가구주라도 정규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양부모가구에 비해 낮을뿐더러 고용이 불안정하고 임금수준이 일반적으로 낮은 임시직 또는 일용직으로 일하거나 영세 자영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아 취업가구의 빈곤문제도 심각하게 나타났다.

남성한부모가구주의 경우 비정규직이 약 21%, 자영업 종사자가 약 19%에 이르고 있다. 유형별 주거형태에서는 여성한부모가구의 자가비율이 약 38%로 나타났는데 이는 남성한부모가구의 53%, 양부모가구의 57%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이다. 또한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수 평균을 가구유형별로 비교한 결과, 양부모가구가 한부모가구에 비해 약간 많은 1.75명의 자녀를 가지고 있으며 한부모가구 내에서는 빈곤가구일 경우 평균자녀수가 적다.

2. 가구유형별 경제적 빈곤실태

1) 가구유형별 가구소득, 자산, 및 부채

다음의 <표 2>는 양부모가구 및 남성한부모가구, 여성한부모가구의 경제적 빈곤실태를 비교하기 위해 소득원천, 가구 자산 및 부채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이 표에 의하면 양부모가구의 평균 소득은 약 280만원으로 남성한부모가구의 약 163만원이나 여성한부모가구의 146만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천별 소득규모를 비교해보면 양부모가구는 근로소득항목에서 뿐만 아니라 부동산소득항목에서도 한부모가구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표 2> 소득원천별 소득규모, 자산 및 부채규모: 상대적 빈곤여부를 기준으로

(단위: 만원)

평균	양부모가구			남성한부모가구			여성한부모가구		
	전체	비빈곤	빈곤	전체	비빈곤	빈곤	전체	비빈곤	빈곤
(1)근로소득	258.32	279.47	78.22	147.83	218.45	65.49	133.27	210.44	65.70
(2)금융소득	1.75	1.78	1.53	2.01	0.54	3.53	0.00	0.00	0.00
(3)부동산소득	13.60	15.07	3.35	8.62	15.26	1.73	2.00	5.34	0.00
(4)사회보험	0.90	0.89	0.99	0.00	0.00	0.00	4.81	1.70	6.68
(5)공공부조	0.30	0.08	1.84	1.59	0.04	3.21	6.11	5.28	6.61
(6)사적이전소득	5.07	3.92	13.11	5.72	5.65	5.80	2.86	3.18	2.66
총소득((1)~(6))	278.36	301.24	81.56	162.99	239.96	73.24	145.93	225.97	75.85
총자산	3546.08	3904.23	1018.62	1159.33	2200.88	40.35	2734.62	4487.50	1682.33
총부채	3072.52	3057.97	3175.27	1468.97	1504.20	1432.44	2286.66	4059.74	1260.45
부채/자산	0.86	0.78	3.11	1.26	0.68	35.50	0.83	0.90	0.74

주: 노동패널조사의 여성한부모가구들은 금융소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특히 빈곤 여성한부모의 경우 부동산으로부터 얻는 수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처럼 공적이전소득항목에서는 여성한부모가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사적이전소득에서는 남성한부모가구에 비해서 차지하는 수준이 절반 정도에 불과하였다. 한편 가구의 총 자산 및 부채 수준을 유형별로 비교했을 때 여성한부모가구의 평균 자산 및 부채수준이 양부모가구에 비해서는 낮으나 남성한부모가구에 비해서는 높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특히 상대적 빈곤선 아래에 위치한 남성한부모가구의 평균 부채규모가 자산대비 약 3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 가구집단의 가계재정 건전성 유지에 심각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었다.

2) 가구유형별 빈곤율과 공·사적 이전소득의 빈곤감소효과

다음의 <표 3>은 중위소득 50% 미만 상대적 빈곤율과 공적 및 사적 소득이전의 빈곤감소효과를 유자녀 가구형태별로 제시하고 있다. 이전소득이 전혀 없을 경우, 양부모가구의 빈곤율은 11.28%인데 반해 남성한부모가구의 빈곤율은 24.72%, 여성한부모가구의 빈곤율은 51.02%에 달했다. 가구유형별로 큰 차이가 존재하는데 양부모가구에 비해 남성한부모가구는 약 3배, 여성한부모가구는 5배 정도의 높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어 경제적 빈곤실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표 3> 공·사 이전소득의 절대적 빈곤감소효과 비교

(단위: %)

	상대빈곤율				
	소득이전전(A)	(A) + 사회보험(4)	(A) + 공공부조(5)	(A) + 사적이전(6)	(A) + (4,5,6,7)
전체	12.50	12.33	12.42	11.97	11.71
양부모가구	11.28	11.10	11.27	10.78	10.62
남성한부모가구	34.72	34.72	34.72	32.70	32.70
여성한부모가구	51.02	51.02	47.72	50.05	45.60
	소득이전에 따른 빈곤율 변화				
	(A) + (4)	(A) + (5)	(A) + (6)	(A) + (4,5,6,7)	
전체	-0.17	-0.08	-0.53	-0.79	
양부모가구	-0.18	0.01	-0.50	-0.66	
남성한부모가구	0.00	-0.00	-2.02	-2.02	
여성한부모가구	0.00	-3.00	-0.97	-5.42	

주: 소득이전전 소득(A)은 공·사적이전소득을 제외한 가구내 근로소득, 자산소득, 기타소득을 포함한 소득을 의미한다.

이전소득의 빈곤감소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적소득이전의 빈곤감소효과는 남성한부모가구에서 크게 나타난 반면에 기타 소득의 빈곤감소효과는 여성한부모가구에서 가장 큰 것으로 밝혀졌다. 여성한부모가구는 사적이전소득이 아무런 영향을 주고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해당 집단에 대한 사적이전소득액 수준이 극히 낮기 때문에 해당 가구집단의 빈곤탈출에 그다지 기여하지 못함을 시사한다.

다음의 <표 4>는 2003년도 최저생계비 급여기준을 토대로 산출한 우리나라 가계의 절대빈곤율과 공적/사적 소득이전의 빈곤율 감소효과를 가구형태별로 제시하고 있다. 예상대로 최저생계비기준의 절대적 빈곤선을 기준으로 빈곤여부를 판별할 경우 중위소득 기준의 상대적 빈곤율보다 대체적으로 낮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었다. 공적 또는 사적 소득이전이 전혀 없을 경우의 양부모가구 빈곤율은 11.40%로 나타났는데 반해 남성한부모가구 30.69%, 여성한부모가구 50.75%로 나타나 약 3~5배정도 높은 빈곤율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개별 이전소득의 빈곤감소효과를 살펴볼 때 사적소득이전의 절대빈곤감소효과는 남성한부모가구에서 제일 높은 수치를 기록한 반면에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효과는 여성한부모가구집단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 공·사 이전소득의 상대적 빈곤감소효과 비교

(단위: %)

절대빈곤율					
	소득이전전(A)	(A) + 사회보험(4)	(A) + 공공부조(5)	(A) + 사적이전(6)	(A) + (4,5,6,7)
전체	13.95	13.76	13.81	13.38	13.06
양부모가구	11.40	11.22	11.39	10.88	10.72
남성한부모가구	30.69	30.69	30.69	28.87	28.87
여성한부모가구	50.75	50.08	47.99	49.95	46.51
소득이전에 따른 빈곤율 변화					
	(A) + (4)	(A) + (5)	(A) + (6)	(A) + (4,5,6,7)	
전체	-0.19	-0.14	-0.58	-0.89	
양부모가구	-0.18	-0.01	-0.52	-0.68	
남성한부모가구	0.00	0.00	-1.82	-1.82	
여성한부모가구	-0.67	-2.76	-0.80	-4.24	

여성한부모가구는 남성한부모가구의 2.02%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0.8%의 사적이전소득의 절대빈곤감소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진 반면 공공부조에 의한 절대적 빈곤감소효과는 여성한부모가구에서 약 2.8%로 높게 제시되었다. 최종적으로 사회보험, 공적부조, 기타 사적이전소득을 모두 포함할 경우, 남성한부모가구와 여성한부모가구에서 각각 28.87%와 49.95%로 빈곤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본 연구는 남녀 한부모가구의 재정적 소득빈곤실태를 양부모가구의 경우와 비교함으로써 유형별 빈곤율의 차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공적 및 사적 소득이전효과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내용이 파악되었다.

첫째, 한부모가구라 할지라도 가구주 성별에 따라 이질적인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동일한 가구유형 내에서도 가구의 빈곤지위에 따라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가구주가 상용직에 종사하거나 교육수준이 높은 가구는 빈곤층에 귀속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여성한부모가구주의 경우에는 대출 이상의 학력에도 불구

하고 상대적 빈곤층에 처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금 등의 근로 조건의 실질적 개선 없이 단순히 인적자본의 확충만으로는 여성한부모가구를 상대적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경제적으로 취약한 한부모가구의 소득구성에서 공적 또는 사적이전 소득보다는 가구주의 근로소득이 아직까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공적 또는 사적이전소득의 비중이 매우 낮으며 이로 인한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의 감소효과도 미약하였다. 남성한부모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효과는 매우 적은 것으로 제시되었으며 여성한부모가구에서 사적소득이전은 빈곤율 감소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종적으로 자녀양육과 생계보장이라는 두 가지 난관에 처한 한부모가구의 빈곤탈출 확률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한부모가구의 빈곤탈출을 위해 최저생계비 기준을 단순히 상향조정하는 방안보다는 저연령대의 자녀를 가진 한부모가족을 위한 직접적인 양육 및 주거비를 절감해 주는 것이 임금인상으로 인한 시장에서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동시에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둘째, 지금까지의 한부모가구에 대한 공적 지원은 주로 저소득 여성한부모가구에 치중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빈곤층 남성한부모가구도 사회적 취약집단임이 분명하므로 해당 집단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남성한부모가구에서의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효과가 매우 적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최저생계비 결정 및 집행과정에 있어서도 현재는 가구원의 총수만이 고려대상이 되고 있으나 이러한 획일적인 기준보다는 사적이전소득의 격차와 기타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차이를 고려하여 가구주의 성별, 자녀수, 자녀의 연령 등에 따라 차등화된 세부 기준에 따라 시행되는 편이 보다 합리적이다.

셋째, 한부모가구주의 노동시장 참여가 해당 집단의 절대적 빈곤을 넘어서 상대적 빈곤탈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이미 해외에서 성공적으로 시행중인 다양한 형태의 노동지원제도들이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 한부모가구주들을 대상으로 보다 나은 근로조건과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근로연계형 복지제도와 대상자의 특성별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근로와 양육을 동시에 병행해야 하는 미취학아동을 가진 가구를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양육부담을 분담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육시설의 확충이 절실하다.

넷째, 본 연구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여성가구주의 낮은 교육수준 문제 못지

않게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에 대한 진입장벽과 차별은 학력수준이 높은 여성한부 모가구의 구조적 빈곤을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경우 이들의 빈곤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은 가구의 최저소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소득이전 뿐이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시각에서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을 없애고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의식개선 노력과 효과적인 지원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순이 (1990) 『도시빈곤 모자가정 실태와 복지에 관한 연구』 한국복지재단.
- 김미숙 · 박민정 · 이상현 · 홍석표 · 조병운 · 원영희 (2000) “저소득 편부모 가족의 생계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 김영란 (1998) “빈곤의 여성화, 사회복지, 세계화” 『여성과 사회』 9:64-79.
- 김영화 · 조희금 (2002) 『현대사회와 여성복지』 양서원.
- 김윤정 (2001) 『여성복지론』 대학출판사.
- 김학주 (2005) “소득계층별 가계의 부채부담 연구” 『사회보장연구』 21:119-147.
- 박경숙 (2001) “저소득 모자가정 빈곤실태와 자활대책 개선방안: 국민기초생활 보장 자활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보장학회 2001년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67-98.
- ____ (2003) “세대관계의 다양성과 구조” 『한국사회학』 37(2):61-95.
- 박영란 · 강철희 (1999) “저소득 모자가정 가구주의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3:91-116.
- 박재규 (2003) “여성가구주의 빈곤화와 빈곤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제4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발표논문.
- 박찬용 · 김진욱 · 김태완 (1999) 『경제위기에 따른 빈곤수준 및 소득불평등 변화와 정책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변희순 · 송다영 · 김영란 (2002) “가족유형에 따른 생활실태와 복지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62.
- 여윤경 · 양세정 (2001) “가구유형에 따른 소비지출패턴 비교 분석” 『소비자학연구』 12(4):65-81.

- 옥선화 · 성미애 · 허정원 (2001) “경제위기 이후의 빈곤 여성가장의 생활실태 조사” 《대한가정학회지》 39(2):1-13.
- 이성립 (2004) “편모가계 여성가장의 취업 및 가계의 경제상태: 양부모 가계 와의 비교분석” 22(1):153-165.
- 조희선 (1998) “저소득 모자가정복지의 실제와 지원방안-서울시를 중심으로” 《생활과학》 창간호:199-231.
- 주인숙 (1998) “편모가정의 가계경제상태 평가” 《자연과학연구》 5:1-13.
- 최선화 (1999)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노인의 빈곤 원인” 《한국가족복지학》 3:187-211.
- 통계청 (2003) 경제활동인구조사.
- _____ (2005)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 이혼편).
- _____ (2006) 가구구성/가구주의 연령별 추계가구.
<http://kosis.nso.go.kr/cgi-bin/sws-999.cgi>
- 한국노동연구원 (2005) 《1-6차년도 User's Guide》 .
- 한국여성개발원 (2002) 《여성통계연보》 .
- Bane, Mary J. and David Ellwood (1986) “Slipping Into and Out of Poverty: The Dynamics of Spells”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21(1):1-23.
- Feenberg, Daniel R. and James M. Poterba (2000) The Income and Tax Share of Very High-income Households, 1960-1995. Papers and Proceedings of the 112th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Boston. January 7-9, 2000.
- UNDP (2003) *Human Development Report 2003-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 Compact Among Nations to End Human Poverty* New York: UNDP. 25-27.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Poverty by Types of Household with Children: Comparing Male-headed, Female-headed, and Dual-parents Household

Hak-Ju Ki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conomic deprivation of male-headed or female-headed households. Household having children under the age of 18 are categorized into three types according to the gender of household head: male-headed household, female-headed household, and dual-parents household. The findings from data, for this study came from the Korean Labor Panel Study in 2003. The analysis shows that the household's age, education, residence types, etc are key explanatory variables in determining whether to be in poverty. While the public income transfer is most effective in reducing poverty in female-headed households, the private income source is relatively more useful among male-headed families. Since single-household families are particularly at risk, public policy makers should pay special attentions to developing and expanding welfare-to-work programs which provides work incentives to overcome relative poverty and community networks on child care.

Key Words: economic deprivation, single-headed household, poverty